

V. 제품인증신청자 및 인증된 제품의 공급자의 권리, 의무

1. 다른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표시하기 위해 동일한 마크를 사용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각 인증마크의 의미에 대한 혼동을 피하도록 인증업체가 제품인증 표시를 하도록 하며 해당마크의 표시 전에 그 표시내용 및 도안을 첨부하여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다른 적합성 인증 시스템을 위해 다른 마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동일로고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인증기관의 법인로고 사용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2. 인증서 및 마크의 사용

2.1 해당 인증제품에 표시하는 제품인증마크의 도안, 규격 및 색상 등은 첨부1 에 따른다.

2.2 제품인증을 받은 공급자는 그 공장의 정문 및 사무실 등에 표시판을 게시할수 있다.

2.3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물품 또는 단위포장에 제품인증표시를 확대,축소하여 이를 홍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약정서상에 인증품목, 인증분야, 인증범위로 표시하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4 제품표시 인증을 받은 공급자는 해당 법률, 관련기준 및 인증기관 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포장용기 등에 그 상품이 제품인증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표시규정과 표시에 대해 해당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인증서 발급 전에 공급자가 이를 준수토록 설명 및 조치한다.

2.5 공급자는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제품인증

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 표시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주지시키기며 약정서에 명기한다.

2.6 인증책임자는 인증서 양식을 인쇄하여 제품인증시마다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양식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7 인증책임자는 광고, 카달로그 등에서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한 언급, 제품표시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라이선스,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경고, 표시공지, 인증취소에 관한 문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첨부 1. 인증마크

1. 인증마크의 작도요령

- 제품인증마크는 KAS 사무국의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97호, 2009년 12월 31일)에 따라 작도된 것이며,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야 함.
- 아래의 작도요령 그림에서 인증기관의 명칭(Korean Register) 및 인정번호의 Font는 Times New Roman이며, 테두리선의 두께는 3 mm, 중앙 구분선의 두께는 1mm, 인증기관의 마크는 아래의 기관 마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상기 제품인증마크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품인증마크의 세로 및 가로 비율, 테두리선의 두께,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의 마크 등이 모두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도록 하여 사용하여야 함.



(1)의 색상(RGB): 0. 124. 184

<제품인증마크의 작도요령>



<기관 마크 이미지>